



연구보안 관리 지침

규정번호	8-0-17		
제정일자	2015. 11. 10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 .0	총페이지	3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등에 따라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연구보안 관리 지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지침은 본 대학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원기관장 : 연구과제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의 장
2. 연구책임자 : 해당 연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연구자
3. 연구관리부서 : 연구과제의 협약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
4. 참여연구원 :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제4조(연구과제 보안관리 심의)

연구관리위원회는 연구과제보안관리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관리 지침의 개정
2.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에 대한 적정성
3. 연구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
- 4. 국방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에 따른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분류절차)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시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지원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 ② 연구지원기관장은 보안등급 분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보안등급 변경)

- ① 국가연구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지원기관장에게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구지원기관장이 정한 보안등급 분류내용이 본 대학 보안등급 분류와 다를 경우에는 연구지원기관장이 정한 보안등급 분류에 따른다.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연구지원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외국기업,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의 위탁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과제에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한다.
-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정보, 자료, 결과물을 비밀로 취급하고 관련 연구시설 등이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보안서약서를 연구지원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연구관리부서는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9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대외비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지, 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연구지원기관장에게 보고하며, 연구지원기관장은 관련 연구지원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연구지원기관장은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1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관련 법규 및 연구과제 관련 제규정을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